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특정업무경비 지출증빙 미첨부 또는 지출내역 부실 작성
소 관 청 국회
관 계 기 관 국회사무처
내 용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에서 수사, 감사, 예산 등 특정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에 따라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소요 경비를 실비 지원하고 있다.

(1) 특정업무경비 지출증빙 미첨부 또는 지출내역 부실 작성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고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 지출내역을 기록하며 감독자가 확인·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2013. 2. 1. 통보한 「특정업무경비 집행요건 강화지침」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첨부가 곤란한 경우 지급내역에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업무경비를 실비 집행할 때는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특정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되었음을 명확

히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기록·관리하여 특정업무경비가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에서 헌법재판소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정업무 경비 실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카드매출전표 등 지출증빙 없이 현금수령증 또는 구체적이지 않게 작성한 집행내역만을 첨부한 채 실비를 집행하여 특정 업무경비가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 국회의사무처의 경우

위 관서에서는 2012년 위원회 간사활동비(183,598천 원)에 대해 지출증빙이 나 지출내역은 첨부하지 않은 채 현금수령증만 받고 집행하는 등 [별표 5] “국회사무 처의 2012년도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과 같이 5개 항목의 집행액 계 2,706,785천 원에 대해 현금수령증이나 지급사유 등이 구체적이지 않게 기록된 지출내역확인서만 관리하고 있어 이로서는 경비집행의 정당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관서에서는 2012년까지 기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출증빙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고 지출내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아니하다가 「특정업무경비 집행요건 강화지침」이 통보된 이후에는 영수증 첨부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지급일자, 금액, 사유 등을 지출내역에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관의 기관의 특수한 상황을 사유로 관련 자료의 샘플만 감사자료로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고 전체 자료 및 현황을 제출하지 않아 [별 표 6] “국회사무처의 2013년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과 같이 5

개 항목의 집행액 계 567,781천 원에 대하여 영수증 등 지출증빙 규모, 지출내역 기록·관리 및 경비집행의 정당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별표 5]

국회사무처의 2012년도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

구분	계(비율)	위원회간사 활동비	소위원회 활동비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 활동비	의정활동 업무협의지원비	기관운영 업무수행 경비
예산액	3,170,196	300,000	696,000	269,840	789,630	1,114,726
집행액	2,706,785	183,598	443,066	265,760	780,371	1,033,990
- 카드영수증 등 증빙	-	-	-	-	-	-
- 지출내역서만 구비	2,706,785(100)	183,598	443,066	265,760	780,371	1,033,990
- 현금수령증만 구비	-	-	-	-	-	-
지급개시연도	-	2009년	2001년	2004년	2002년	2001년
편성목적	-	위원회 간사활동지원 경비	소위원회 운영경비	연구조사, 예비검토, 안전검토 경비	국회 운영협의 등 경비	기관 홍보, 행사 등 기관운영 경비

자료: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자료 및 국회사무처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6]

국회사무처의 2013년도 1/4분기 특정업무경비 실비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

구분	계(비율)	위원회간사 활동비	소위원회 활동비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 활동비	의정활동 업무협의지원비	기관운영 업무수행 경비
예산액	2,924,348	336,000	696,000	269,840	507,782	1,114,726
집행액	567,781	53,999	132,860	98,926	141,732	140,264
- 카드영수증 등 증빙	-	-	-	-	-	-
- 지출내역서만 구비	567,781(100)	53,999	132,860	98,926	141,732	140,264
- 현금수령증만 구비	-	-	-	-	-	-
지급개시연도	-	2009년	2001년	2004년	2002년	2001년
편성목적	-	위원회 간사활동지원 경비	소위원회 운영경비	연구조사, 예비검토, 안건검토 경비	국회 운영협의 등 경비	기관 홍보, 행사 등 기관운영 경비

자료: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자료 및 국회사무처 제출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국회사무총장은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와 다르게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한 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특정업무경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